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선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9 - 17
----------	-----------

발의연월일 : 2019. 4. .
발 의 자 : 김선경, 김성한, 황영호, 정정희
신낙형, 송순효, 김동협, 김용원
이종숙, 이충현, 이충숙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기금 운영 및
관리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에 따라 기금 명칭 변경 (안 제1조)

- '옥외광고정비기금' ⇒ '옥외광고발전기금'

나. 상위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지 않은 사항 삭제(안 제2조제7호)

다. 기금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제6조의3)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19. 4. 8. ~ 4. 15.): 의견 없음

2) 관계법령: 붙임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하고 “운용에 관하여”를 “운용에”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옥외광고사업수익금”을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제6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6조(중전의 제5호)중 “가이드라인”을 “기준에 관한”으로 한다.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중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를 “기금운용계획에 따라”로 한다.

제5조 제3항 중 “옥외광고 업무 담당 국장”을 “기금관리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옥외광고 업무 담당 과장”을 “기금관리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옥외광고업무”를 “옥외광고 업무”로 한다.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옥외광고관련”을 “옥외광고 관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으로 한다.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제1호에 의하여”를 “제4항제1호에 따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그 밖의”를 “그 밖에”로 하고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으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위원회의 의사는”을 “위원회는”으로 하고, “개의하고”를
“회의를 시작하고”로 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제3항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으로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를
“구의회”로 한다.

제10조 제목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을 “(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를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로 한다.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 업무 담당 국장”을 “기금운용관: 기금관리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금출납원 : ”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증빙서류는 따로 관리 할 수 있다.”를 “증빙서류는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 중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을 “기금관리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수입·
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④ (생략)

1. 예산업무 담당 과장, 옥외광고
업무 담당 과장

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
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
운용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6. 간판 디자인 및 제적설치 기준에
관한 개발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기금관리 업무
담당 국장-----.

④ (현행과 같음)

1. ----- 기금관리
업무 담당 과장

2. 옥외광고 업무-----

3. 옥외광고 관련 -----

4.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생략)

- 1. 2. (생략)
- 3.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현행과 같음)

- 1. 2. (현행과 같음)
- 3. 그 밖에 -----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
- ③ 위원회는 ----- 회의를 시작하고 -----.

<신 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 설>

제8조(간사 및 수당)

①·② (생 략)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간사 및 수당)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
범위에서 -----
-----.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
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
일전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 업무
담당 국장

2. 기금출납원 : 기금관리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이에 따른 증빙서류는 따로
관리할 수 있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강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구의회 -----
-----.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① -----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

1. 기금운용관: 기금관리 업무
담당 국장

2. 기금출납원: -----
--

② -----

----- 증빙서류는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

-----.

관계 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6. 1. 6.>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개정 2016. 1. 6.>

1.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군·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2.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6. 1. 6.>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 1. 6.>